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2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6054 정정보도청구 등

원 고 1. 대통령비서실

2. A

3. B

4. C

5. D

피 고 1.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2. E

3. F

4. G

변 론 종 결 2015. 3. 12.

판 결 선 고 2015. 4.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H』 (I)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



여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H』(I)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나. 노컷뉴스의 기사 제목 『J』(K)에 게재된 동영상 및 L에 게재된 동영상을 각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위 동영상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안에 표시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본문의 내용을 위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의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표시하며, 그 배경화면은 정정보도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위 기간 안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대통령비서실과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 C, D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대통령비서실 :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가 위 기간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



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 주문 제1항 및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위 기간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원고들과 원고 대통령비서실에 위 기간 만료 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S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고 A, B, C, D은 각각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M, N, O, P으로서 2014. 4. 29. Q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한 안산시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인터넷신문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E, F, G은 각각 피고 씨비에스아이 소속 R부장, 기자, 기자이다.

나. 1)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S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J』라는 제목 하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과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C BS노컷뉴스 특별취재팀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S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H』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G이다.



3)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T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U』라는 제목 하에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V』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작성인은 피고 F이다(이하 위 1) 내지 3) 항기재 기사 및 동영상을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Q이 2014. 4. 29.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간접강제를 구하고, 원고 A, B, C, D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명예훼손을 당한 자)인지 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고,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은 원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주도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기사에서 조문 연출의 주체를 '정부 측', '청와대 측', '청와대'라고 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내용,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지위, 대통령 조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일반 독자나 시청자라도 위 '청와대 측'의 표시가 원고 대통령비서실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정부관계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라면 이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조문 연출의 주체로 지명된 바는 없고,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는 취지의 전체적인 인상을 받는다고 보기是很 어려운 점, ④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총 443명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통령비서실만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정정보도, 간접강제, 손해배상)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한지 여부

1)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



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라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탐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통령이 2014. 4. 29.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할머니를 유족으로 알고 손을 잡고 위로를 하였고 언론사는 위 위로 장면을 방송하였는데, 그 할머니가 유족인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자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의 조문이 가식적으로 연출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의혹은 조문 당시 상황에 기초한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취재 결과 이 여성(할머니)은 안산에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 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Q을 만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S자 경향신



문의 보도내용이나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할머니가 청와대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대통령을 만났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 씨비에스아이 역시 조문 연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대통령의 조문 동영상만으로 연출 논란을 정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2015. 1. 20.자 준비서면 참조), ④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서 있던 할머니나 조문 동영상의 장례지도사에 관하여 취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 경호내용 등에 관하여도 별다른 취재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위와 같이 조문 연출 의혹에 관한 보도를 보류하던 중 정부핵심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측이 할머니에게 부탁하였다.'라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핵심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는 점 및 그 확인에 신빙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⑥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W자 노컷뉴스에서 이 사건 기사 중 기초사실 제1의 나.1)항 기재의 『J』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실제로 Q이 조문하는 동영상을 보면 정부 관계자가 해당 노인을 Q 대통령 근처로 안내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대목에서 '정부 관계자'로 표현된 인물은 '장례지도사'로 밝혀졌기에 해당 문장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각 막연하게 기재한 이 사건 기사는, 달리 위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피고 씨비에스아



이는 '청와대의 조문 연출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간접강제

1)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방법,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노컷뉴스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첫 부분에 별지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이 사건 기사 중 『H』(I)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위 정정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H』(I)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기초사실 제1의 나.1), 3) 기재 각 동영상을 각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별지1 정정보도문 중 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위 동영상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여 [] 안에 표시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본문의 내용을 위 동영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의 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표시하며, 그 배경화면은 정정보도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2)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주문 제1항 기재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문 제1항 기재 기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대통령비서실과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사회적 지위, 보도 경위, 보도매체의 종류, 보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20

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대통령비서실의 피고 씨비에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판사 김이슬



별지1

정정보도문

1. 제목 : [] 등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본 신문은 지난 [] ① '[]',
② '[]', ③ '[]'
[]라는 각 제목으로, 2014. 4. 29. []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당시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노인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의 합동분
향소 조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 노인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
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조문 현장
을 연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습니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20

별지2

노컷뉴스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29일 [] 의 안산 청부 합동분향소 조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문이 가식이다'라는 내용의 SNS 등을 통해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전 [] 은 안산 청부 합동분향소가 문을 열기 전 먼저 찾아 조문을 했다. 이같은 소식은 언론 등을 통해 ' [] 이 분향소에서 유가족을 찾아 위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 이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이 실제로 연출된 정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화장이 일었다.

특히 30일에는 청부 학습관계자가 "마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노인이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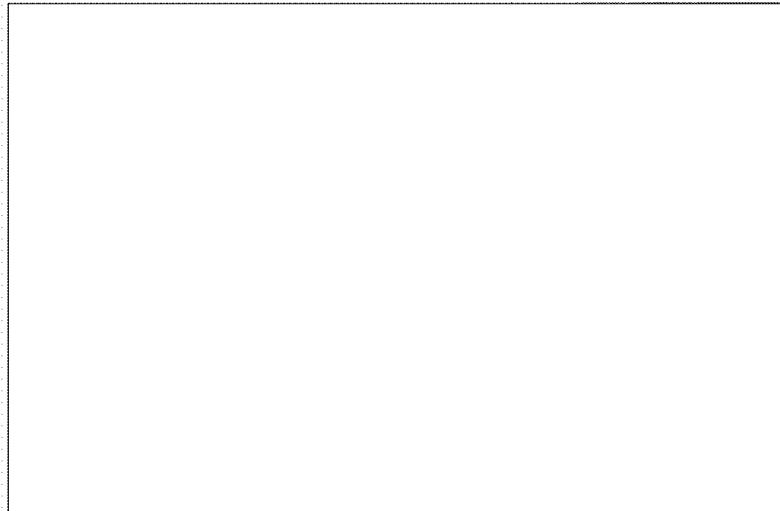
부탁이란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 씨도 이날 CBS [] 에 출연해 "(그 할머니가)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알아보니 유가족 대표를 비롯해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는 분이 아무도 없다"면서 "실제 유가족이라고 하시면 실례가 되겠지만 도대체 어느 분하고 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20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REDACTED] 이 새로 만들어진 화랑유원지에 분향소에 모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다”면서 “정말로 사과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직접 그러한 뜻을 좀 개인적으로도 표명을 해주셔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REDACTED] 이 조문을 마치고 떠난 후 합동분향소 밖으로 내보내진 조화. (사진=노컷TV
[REDACTED] PD)

한편 [REDACTED] 이 경부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날 일부 유족들의 항의로 고성이 오가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조화가 치워지는 등 현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기사 주소: [REDACTED]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20

별지3

노컷뉴스



이른바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이 실제로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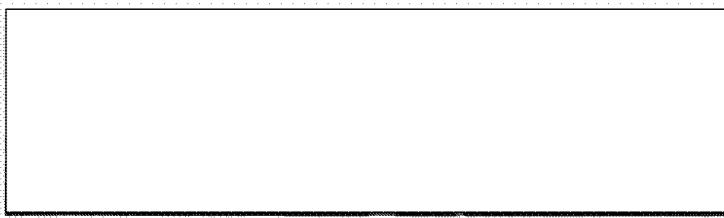
조문 연출 의혹의 핵심은 '_____이 지난 29일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니라 정부 측이 동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30일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29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노인이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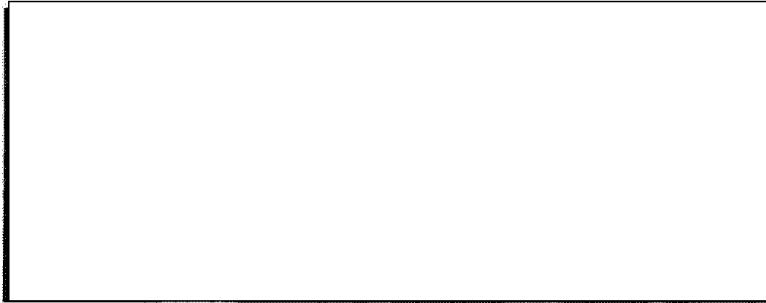
부탁이란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_____은 조문을 한 뒤 이 노인에게 다가가 위로했고, 이 모습은 _____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으로 보도됐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20



[]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위로한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닌 청부 측의 동원한 인물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와 관련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 측은 []이 해당 노인을 위로하게 된 경위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이른바 조문 연출 의혹을 질게 했다.

고 [] 양 아버지 []씨는 3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분향소 안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대동하고 분향을 한 뒤 사진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어느 분이신가 수소문을 해 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조문 연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대변인은 "분향소에는 조문객도 계셨고 유가족도 계셨고 일반인들이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대통령께 다가와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NEWS:right}이이 [] 대변인은 "연출을 해서 득 될 게 아무것도 없다"며 "연출은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시점은 일반인 조문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전 9시쯤이어서 일반 조문객들은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문 동영상을 살펴봐도 []은 '나홀로' 분향을 한 것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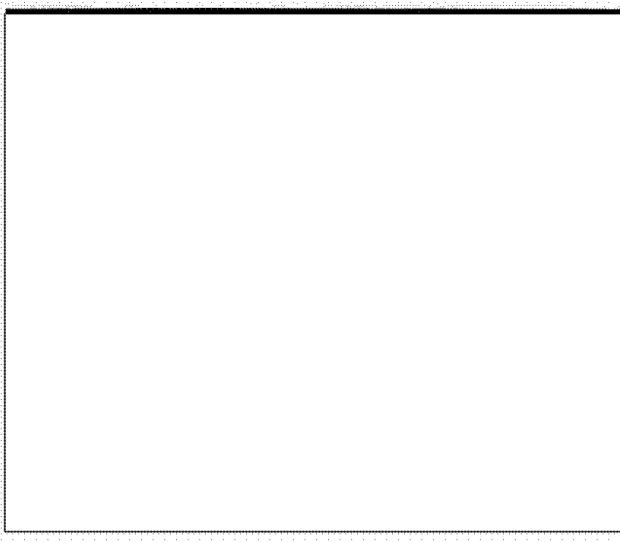
"분향소에는 조문객도 계셨고 유가족도 계셨고 일반인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 대변인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 기사 주소: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20

별지4



[]에 정부 합동 분향장 방문 당시 조문에 동행하고 []이 친족으로 참석하는 정
의대 졸업생 축하의 인사를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학점 관계자는 30일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장에서 축하 명
예달 노인에게 부탁해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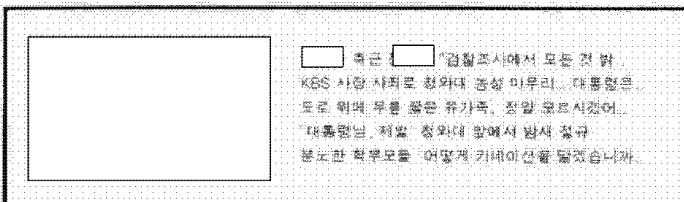
여전 해당 노인이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은 한 했다고 전했다.

후학이란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기관차에서 뒤를 마트리 는 것처럼 있다.

설제 청와대에서 차공한 조문봉당장에 나오는 할머니의 모습을 매우 복지센스웠다.

할머니는 병원소 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조문봉당장을 끌고 차 []
을 따라 나서고 현장에 있던 경호자도 차의 현내를 받는 장면도 포착됐다.

2014-05-12 CBS 스마트뉴스팀 [] 기자



조경로 기자

